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2
----------	-----

제출연월일 : 2023. 8. 30.

제안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3.6.9.)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명위원회의 정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 제1항)
- 나.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3조 제2항)
-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차례로 제한함(안 제3조 제5항)
- 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 가.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2023. 6. 16. ~ 2023. 6. 21.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기획예산과): 비대상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원안 동의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나.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2023. 7. 3. ~ 2023. 7. 23.(20일)
-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

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토지정보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 문 만 수
	팀장 직위·성명	토지민원1팀장 김 영 란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진 구 (031-590-4757)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4. 작성자

- 도시국 토지정보과 문만수

## 붙임2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토지정보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3A경기남양055)-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토지정보과-11804(2023.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경기남양055) 1부. 끝.

##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김일녀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2023. 6. 19.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7070	(2023. 6. 19.)	접수	토지정보과-12085	(2023. 6. 20.)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남양055			
정책명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명	강진구	전화번호	031-590-475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개정 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위 법령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li></ul></li><li>○ 재개정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명위원회 구성인원, 부위원장, 변경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li></ul></li></ul>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토지정보과장 귀하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토지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3-46)

토지정보과-11803(2023.6.15.)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 감 사 관

주무관	김주현	청렴 윤리팀 장	신경주	감사관	홍준기	2023. 6. 21.
협조자						
시행	감사관-7077	(2023. 6. 21.)	접수	토지정보과-12271	(2023. 6. 2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1985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3-남양주-46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토지정보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강진구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3. 6. 21.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3년 6월 21일</p> <p><b>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b></p> <p>(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p><b>토지정보과장 귀하</b></p>			

##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토지정보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 남양주시 토지정보과-11803(2023. 6. 15.)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현기	적극행정팀장	남성명	법무담당관	2023. 6. 16.	김진배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329	(2023. 6. 16.)	접수	토지정보과-11916	(2023. 6. 1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a href="https://www.nyj.go.kr/">https://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a href="mailto:hgj1235@korea.kr">hgj1235@korea.kr</a>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1. 토지정보과-12954(2023.6.29.)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7.3. ~ 7.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강진구	토지민원1팀 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도시국장	전결 2023. 7. 24. 김상수
협조자	법무행정팀장	조성관	법무담당관	김진배			
시행	토지정보과-14882			접수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토지정보과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57	팩스번호	031-590-2159	/ o24o24@korea.kr		/ 대국민 공개	